

[일련번호 : 6]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의 재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입증지 발행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무료 대상자에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상에 재발급 사유를 누락하거나 사유가 오기재 되어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여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신청서를 처리하는 등 신청서 접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재발급 신청일자	수수료		부적정내역
				재발급 사유	수수료 징수	
1			220107	분실	증지없음	미부과
2			220124	분실	증지없음	미부과
3			230217	면제대상	5,000원	과다징수
4			241021	재외국민 주민등록 최초	5,000원	과다징수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